46 선박 건조 근로자에서 발생한 좌측견관절부 회전건개와 관절낭 파열 및 이두장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성별 남 **나이** 55세 **직종** 선박 건조 및 수리업 **업무관련성** 높음

1 개 요

근로자 손ㅇㅇ은 1978년 4월 ㅇㅇ중공업에 입사하여 공사지원부에서 근무하였고 2008년 5월 위 상병을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중공업은 선박건조 업체로 근로자 손○○이 근무한 공사지원부의 업무는 DOCK에서 블록 조립을 위한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전기 및 가스 호스 및 케이블, 수도 배관과 간이 조명을 설치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이며, 주간 근무이다. 연장근무는 2시간씩 한달에 3-5회 이루어졌다. 공사지원부의 다양한 작업 중에서 점유비율과힘든 정도 및 작업형태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분석대상 작업을 선정, 위험정도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부적절한 자세를 유발하는 작업은 조명등 설치/철거 작업과 케이블 및 호스 설치/철거/운반 작업으로 나타났고, RULA 분석결과 조명등 설치/철거 작업은 윗팔(어깨)의 들림과 목의 젖힘으로 인해RULA 점수가 7점으로 반드시 개선을 요하는 작업형태로 나타났고, 케이블 및호스 설치/철거/운반작업은 경우도 반드시 개선을 요하는 6점에 해당되었는데,이는 중량물을 당기는 작업형태로 인한 것이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손○○은 본래 왼손잡이지만, 현재는 양손을 사용할 수 있으며, 1999 년 사고로 손가락 부상을 입어 산재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만성질환 없이 지냈으며 흡연력은 20 PY, 음주력은 주 2-3회 소주 1병 정도였다. ○○병원에서 2004년 5월 3회에 걸쳐 좌측 어깨 통증으로 약물 치료를 한 의무기록이 있고, 2006년 3월에 발생한 전도 재해로 슬관절의 손상과 봉합 수술이시행되었으나, 2008년 1월까지 견관절 부위의 문제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 2008년 5월에 좌측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촬영한 MRA에서 완전한 파열과 충돌 증후군을 확인했다고 ○○의무기록에 기록되어 있다. 손○○의 초기 요양신청 단계에서 작업형태에 따른 부적절한 자세와, 30여년간의 근무 경력을 근거로 해당 상병명과 작업과의 인과관계를 지지하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방사선학적 소견상 퇴행성 소견(특히 견봉의 Hooked type)으로 인해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악화를 원인으로 하는 의견도 있었다.

4 | 결 론

근로자 손ㅇㅇ은

- ① 근무한지 30년이 지난 2008년 5월에 '좌측 견관절부 회전건개와 관절낭파열 및 이두장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았으며,
- ② 업무분석상 목 젖힘, 상지를 들어올리는 작업형태와 중량물 작업을 고려할 때 좌측 어깨의 질병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③ 좌측 견관절 견봉부위의 특성(Hooked type)은 오른편에도 존재하고 본래 왼손잡이이나 현재 양손으로 작업을 하여도, 왼편에 충돌 증후군이 발생 한 데에는 왼편에 작업의 부담이 더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도 개인적인 퇴행성 질병 등 직업 외 위험요인을 찾기 어려우므로,

근로자 손 O O 의 위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